

과기연구주간소식



14호
2024. 9. 2.(월)

발행_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발행인_최연택 위원장 홈페이지 www.kupst.org E-mail: mail@kupst.org

2024년도 국정감사 대응 추진

과학기술본부, 테크노파크본부 2024년도 국정감사 대응

우리 노동조합은 과학기술본부와 테크노파크본부를 중심으로 2024년도 국정감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과학기술본부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최민희 의원실, 김현 의원실, 이해민 의원실 등)과의 면담 진행 등 과방위 여당 의원실과 협조를 통해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을 설문조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국정감사 주요 의제를 확정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김정호 의원실, 장철민 의원실, 김한규 의원실, 서왕진 의원실 등) 면담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노동조합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협조해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24년 국정감사 일정을 오는 10월 7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주요 의제

과학기술본부	테크노파크본부
○ 국가 연구개발 예산 전면 복원 및 안정적 지원 보장	○ 산업기술단지 중심의 장기적인 지역산업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전략 수립
○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법률적 지위(관리 및 감독 주체) 공고화
○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및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선	○ PBS(Project Based System)의 해소를 위한 출연 예산 지원기준 마련과 간접비 계상기준 제개정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민주적 운영 및 출연(연) 리더십 개선	
○ 공공연구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행사와 집회



한국파스퇴르연구소지부 6주년 창립기념식(8.26.)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 회의(8.28)



과학기술보안관리단지부 2024년 임금교섭 5차(8.29)



경남연구원지부 워크숍(8.29.)

주요 언론보도

[이공계 석사과정 월 80만원·박사과정 110만원…'예타면제 확정'\(종합\)](#) - 연합뉴스

[윤 대통령 '카르텔' 발언 후 과기부 R&D과제 1만여개 연구비 삭감…97개는 연구 중단](#) - 경향신문

[1만2천개 삭감, 96개 '매몰'…윤 'R&D 카르텔' 후폭풍, 숫자로 확인](#) - 한겨레

[9월 2일 정기국회 개최식…10월 7~25일 국정감사](#) - 노컷뉴스

["R&D만 집중할 수 있도록"…정부, 연구행정 선진화·규제 개선 추진](#) - 뉴시스

[\[2025년 예산안\]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29조7000억원](#) - 파이낸셜투데이

["R&D 고무줄예산, 국제과학계 신뢰 못얻어"](#) - 매일경제

[통합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오늘 공식 출범](#) - 경북매일

주요 일정

- 9/2(월) 15:30 대전 공공기관 대표자 모임
9/3(화) 14:00 과학기술보안관리단지부 분회장 회의
9/4(수) 12:0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지부 단체협약 갱신 관련 회의
14: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 단체교섭(실무 3차)
14:00 김치연구소지부 조합원 간담회
9/5(목) 10:00 대구테크노파크 관련 대구 노동청 조사
14:00 영남지역본부 모임(~9/6)
9/6(금) 11:00 경남테크노파크 임금교섭 상견례

[알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 가.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국가R&D 과제선정 불이익 (안 제12조제5항제3호 신설)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 연구개발기관이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R&D 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나.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특례의 근거 명확화 (안 제2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 근거를 명확화
- 다.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 (안 제27조제3항제4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제외 대상을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에서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변경하고, 각 목 조항을 삭제함
- 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부담 경감 (안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
기업의 기술료 및 연구개발성가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경우, 납부기준인 납부요율을 현행대비 1/2 수준으로 하향 조정
- 마. 기술료의 연구자 보상 강화 (안 제41조제2항제1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기술료의 연구자 보상 사용비율 기준을 상향(현 50%이상 → 60%상) 조정